

교수학습정보센터 운영규정

2016. 3. 1 제정
2020. 5. 1. 일부개정
2022. 10. 1. 전부개정
<교수학습정보센터>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학습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학습코칭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함
2.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솔루션 제공과 온라인활용교육 및 ICT활용교육을 지원하며 공개교육 콘텐츠 공유 등 혁신적 교육환경을 제공함
3. 본교 정보화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

제3조(사업) 센터는 제2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기획 분야
 - 가. 교수·학습법 개선을 위한 성과분석
 - 나. 교수·학습법 연구 및 자료개발
 - 다. 기타 교수·학습 질 제고와 관련된 분야
2. 교수지원 분야
 - 가. 교수법 개발 및 활용 지원
 - 나. 교수법 및 교육내용에 대한 분석
 - 다. 기타 교수법과 관련된 분야
3. 학습지원 분야
 - 가. 학습방법 개발 및 활용 지원
 - 나. 학습방법 분석 및 상담
 - 다. 기타 학습능력 향상과 관련된 분야
4. 원격교육지원 분야
 - 가. 원격교육 관련 분야 개발 및 활용 지원
 - 나. 원격교육 시스템 분석 및 상담
 - 다. 기타 원격교육 관련된 분야
5. IT 분야
 - 가. 정보 인프라 구축
 - 나. IT장비 도입 및 운영
 - 다. 정보보안
 - 라. 중장기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
 - 마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

제2장 조직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교수) ① 센터는 약간 명의 박사학위의 자격을 갖춘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연구교수의 근태를 관리하고 복무 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연구교수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제6조(연구원) ① 센터에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「일반직(Ⅱ), 지원직(Ⅱ)직원 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제7조(업무분장) 센터의 업무분장은 「세종캠퍼스 사무분장규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
제9조(구성 및 임기)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에 전임교원 또는 전문가를 센터장이 추천하고 세종부총장이 위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의 임기만료 시 종료되며,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-학습 연구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수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3.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4.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5. 정보 인프라 구축
6. IT장비 도입 및 운영
7. 정보보안
8. 중장기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
9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11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2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세종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13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본교 회계로 충당한다.

제14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5조(재산귀속) 센터가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제5장 기타

제16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1조(명칭) 개정, 제3조(사업)제1호 신설, 제3조제2호 내지 제3조제4호 개정, 제9조(기능)제1호 신설 및 호 번호 변경)
2. (경과조치) 교수학습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제3조(사업)제4호 교육매체지원분야 삭제는 2019년 9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.
3. (규정명의 변경) 「세종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」에서 「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」으로 규정명을 변경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규정 통합 및 명칭 변경) 「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」과 「세종학술정보원 IT자문위원회 운영규정」을 「교수학습정보센터 운영 규정」으로 통합한다.